KOSHA GUIDE E - 133 - 2013

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8. 3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 : 인천대학교 황명환 교수
- o 제·개정 경과
 - 2013년 7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KS C IEC 60519-1 전기가열 설치시의 안전성 제1부 : 일반 요구사항
 - KS C IEC 60519-2 전열설비의 안전성 제2부 : 저항 가열장치를 위한 개별 요구사항
 - KS C 2830 전열기기용 히터 및 석영관
 - BS 1945 Fireguards for heating appliances
 - BS 3456 The testing and approval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.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 제1 절(전기기계·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8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기술지침은 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술지침은 전열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전열기기"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열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전기기기 를 말한다.
 - (나) "방호망"이란 화염이나, 방사재 또는 가열 요소에의 우발적인 접촉이나 접 근의 결과로 유발되는 화재나 손상 또는 전기적 충격의 위험을 줄이거 나 예방할 목적으로 부착되는 부품을 말한다.
 - (다) "전기가열 요소"란 전열기기에 부착되는 가열 저항기 및 계기 등의 요소 를 말한다.
 - (라) "소연성 화염"이란 불꽃 없이 천천히 타는 불을 말한다.
 - (마) "가스 봉입형 히터"란 석영관에 텅스텐 선을 넣고, 아르곤, 가스 등의 불활성가스나 할로겐 원소 또는 이의 화합물을 주입하여 봉합한 것을 말한다.

KOSHA GUIDE

E - 133 - 2013

(2)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안전 일반사항

- (1) 전열기기는 정상조건에서 사람의 안전과 화재·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- (2) 전열기기의 모든 부분은 사용전압과 주파수에 따라 설계·제작되어야 한다.
- (3) 고압을 사용하는 전열기기는 절연표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4) 전기감전에 대한 보호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5) 부품의 냉각기능이 사용된 곳에는 이의 기능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.
- (6) 온도조절기, 온도제한기, 온도보호기의 센서는 올바르게 반응하고, 그 작업환경 의 영향, 전자유도 영향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7) 전열기기의 치수를 정하거나 선택할 때에는 운전 도중 가열도체의 저항변화 혹은 충전물의 저항변화를 고려해야 한다.
- (8) 가열 나도체는 정상운전 시 사람, 충전물, 충전물 취급 장비에 접촉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정상운전 시 누설전류로 인한 전기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.
- (10) 전열기기는 방치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전원이 켜지더라도 온도과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

E - 133 - 2013

5. 감전보호

(1) 직접 접촉방호

- (가) 안전전압보다 높은 전압에서 사용되는 나도체가 전열기기 내부에 달려 있는 경우, 도어나 덮개와 같은 장치가 열리면 모든 비접지 가열도체를 전원으로 부터 차단시키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.
- (나) 안전장치는 기계적 동작기기를 차단하는 스프링을 조정하는 동안에도 보호효과가 유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안전을 위해 순시형 접점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상 도체는 각각의 회로 차단기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. 여러 종류의 안전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접점이 하나 또는 여러 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도 있다.
- (라)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상시접촉 접점을 가진 안전스위치 대신에 다른 제어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호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(마) 방호기능은 제어장치나 관련 회로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.

(2) 간접 접촉방호

- (가)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도 운전을 위해 계속 전원이 커져 있어야 하는 장비의 경우 충전장치의 절연이나 접지와 같은 보호수단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, 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.
- (나) 보호도체가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.
- (다) 전열기기의 누전이 가능한 장소에서는 누설전류와 이에 대한 보호접지 및 보호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.

KOSHA 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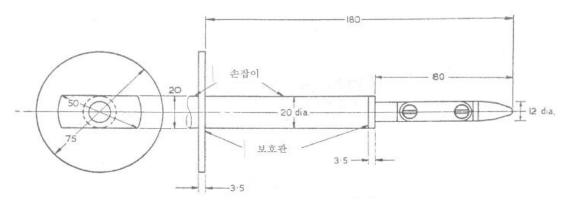
E - 133 - 2013

6. 전열기기용 히터 및 석영관

- (1) 전열기기의 구조
 - (가) 텅스텐 선은 가스가 봉입된 석영관 내에 고르게 삽입되어야 한다.
 - (나) 석영관 내의 텅스텐 선은 점등되었을 때 처짐, 치우침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고정장치를 하여야 한다.
 - (다) 석영관의 양 끝 봉합부는 몰리브덴 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 진 리드선을 사용하여 봉합한다.
 - (라) 베이스는 흔들림 없이 접착되어야 한다.
 - (마) 배기관 봉입부는 취급 시 파손될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, 색 온도 분포 에 편차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.
 - (바) 베이스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.
- (2)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 충전부와 비충전부 또는 접지측 사이의 절 연저항을 측정한 경우 2 MΩ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가스 봉입형 히터의 절연저항은 45 ± 3 ℃에서 4시간 기체를 방치한 후 주위 온도가 40 ± 3 ℃, 상대습도 88 % 이상 92 % 이하의 상태에서 24시간 유지한 후 기체의 외곽 표면에 부착된 수분을 닦아 내고, 500 V 절연저항계로 충전 부와 비충전부 또는 접지측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경우 1 M Ω 이상이 어야 한다.
- (4) 가스 봉입형 히터의 누설전류는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가하여 충전부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 또는 기체의 표면과 대지 사이에 1 $k\Omega$ 의 저항을 접속하여 측정한 경우 0.75~mA 이하가 되어야 한다.

KOSHA GUIDE E - 133 - 2013

- (5) 방호망의 틈새 중 어느 것도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가) 최대 125 mm, 최소 12 mm, 대각선 126 mm 초과
- (나) 최대 50 mm, 최소 20 mm, 대각선 53 mm 초과
- (6) <그림 1>과 같이 손가락 대용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5 N을 초과하지 않는 힘으로 방호망을 접촉할 때 활선 부위에 닿으면 안 된다.



<그림 1> 손가락 대용 시험장치